의안검토보고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건요지 :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1996년 6월 일

내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준 봉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996년 6월 일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1996. 6. 12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 6. 13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정원을 증원하고,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 시본청에서 있어서는 재난관리상황실 운영요원 4명을 보강하여 재난 상황의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해 나가며,
- 소방본부 및 직속기관인 소방서에 있어서는 소방구조·구급차등 장비구입에 따른 운영요원 11명을 증원하여 장비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청사난방시설운영요원 1명을 보강하며
- 사업소중 상수도사업본부, 지하철건설본부, 수질환경사업소의 차량장비구입에 따른 운영인력 3명 증원과 여성회관의 윤락여성 선도업무를 구청에서 전담·운영토록 여성상담원 1명을 동구로 조정하며, 지하철건설본부 정원2명을 의회사무기구로 조정.
- o 근로자종합복지관 정원8명의 한시기간을 1996년 6월 30일에서 199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시본청 및 의회사무기구,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시본 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870명"에서 "874명"으로, 의회사무 기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55명"에서 "57명"으로, 직속기관 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63명"에서 "775명"으로 조정함. (안 제2조)
- 나. 근로자종합복지관 정원8명의 한시기간을 1999년 6월 30일까지로 함. (안 부칙 제2항).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재난상황의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소방장비 구입에 따른 신규 소요인력 확보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한시 기간을 연장하여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ㅇ 주요내용으로는
 - 시 본청에 재난상황의 위기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 난관리상황실운영 요원4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870명에 서 874명으로 조정하였으며,
 - '96. 2. 21 대전광역시 의회 직제규칙 공포로 의회사무처에 신설된 공보계에 2명의 인력을 보강하여 의회사무처기구 정원 총수는 55명에서 57명으로 조정하였고,

- 소방서의 소방장비 8대 신규구입에 따라 소방직공무원 11명을 증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준공이전에 필요한 난방시설운영에 필요한 1명을 증원하여 직속기관에 두는 정원총수를 763명에서 12명이 증원된 775명으로 하였음.
- 사업소중 상수도사업본부, 지하철건설본부, 수질환경사업소의 차 량장비구입에 따라 운영인력 각각1명씩 3명이 증원되었으며 의회사무처 증원요원은 지하철건설본부 2명을 의회사무기구로 조정하였고, 여성회관의 윤락여성선도 여성상담원 1명을 동구 로 조정하여 사업소의 정원 총수는 1.130명으로 변동이 없음.
- 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96. 6. 30까지 한시정원(8명)으로 설치 운영중에 있으나 위탁운영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직영운영을 연장코자 시한을 99. 6. 30까지 3년간 연장하였음.
- 본 조례안은 위기관리 상황 강화와 신규장비구입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증원 조정하였고 사업소와 의회사무처, 구청의 특수사업 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조정하였으며.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한시정원이 만료됨에 따라서 위탁운영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임.